

##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4년 3월 11일
- 제출자 : 종로구청장

#### 2. 위원회 회부

- 회부일자 : 2004년 3월 11일
- 상정일자 : 2004년 3월 16일

<제1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 3. 개정사유

- 시민들의 주차요금징수 시간단위 세분화요구 및 주차요금 감면 제도의 교통정책시행상 꼭 필요한 할인제만 존속하고 실효성없는 할인제의 폐지·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제재 방법강화 등 그동안 교통정책 시행결과 주차장 관리 제도의 개선 및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 아울러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2000. 11. 30. 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자치구 조례를 정비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나 아직까지 우리구 관련조례의 미정비로 인하여 주차요금 징수체계 및 감면제도 등 시조례와 우리구 조례와의 차이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시민의 불편과 혼란이 야기 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4. 주요골자

□ 주차요금징수체계조정

- 최초 30분 기본요금에 초과 10분 단위요금징수체계 및 1~3급지 노상주차장에서 2시간 초과시 기준요금이 2배 부과  
→ 최초 30분 기본요금제도와 1~3급지 노상 주차장에서 2시간초과 주차시 가중요금제도는 폐지하고, 10분 단위 주차요금 징수체계로 조정 (안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 주차장 제한운용근거규정 마련

- 주차장별로 운영자가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시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또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수 있도록함. (안 제6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 주차요금 감면제도 조정

-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해 1시간주차요금 면제 및 1시간 초과시 50% 할인요금 징수  
→ 1시간 면제제도 폐지, 80% 할인요금 적용징수 (안 별표1의 비고란 제7호)
-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 발행 근거규정 신설(안 별표1의 비고란 제6호)
- 10부제 운행차량 및 카풀차량에 대한 50%내에서의 주차요금 감면제도 폐지하고,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이행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20%할인제도 신설(안 별표1의 비고란 제12호)

□ 주차요금 미납차량 제지방법 강화

-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대상에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량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포함(안 제2조 제2항 제2호 신설)
- 주차요금 장기간·고액 미납차량에 대해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량운행 제한장치(바퀴 채움제)를 설치할 수 있고 운행 제한장치 해제시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 3만원 징수근거마련(안 제3조의 2 신설)

□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방법 개선

-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자(안제4조 제2항 제2호)
-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등 주민자율조직을 대상자격에 포함(안 제4조제2항제3호신설)

5. 검토의견

- 별표1의 주차요금징수체계를 현행 최초 30분까지는 일률적으로 기본요금을 받고 초과하는 주차시간에 대해서는 10분 단위로 요금을 징수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최초 30분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10분 단위로만 요금 징수체계로 개선하는 것은 시민들의 경제활동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시간비용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주차요금은

최초30분까지 일률적으로 기본요금을 받도록하고 있어 주차시간 외의 요금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1~3급지 노상주차장에서 2시간 초과 주차시 가중요금제도를 도입하여 요금의 2배까지 주차요금을 부담케 하는 것 또한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없이 주차요금제도만 불신받게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아 폐지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에서는 주차장 운영자가 주차장별로 1시간이나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시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차장 회전율을 제고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정시간외에 장시간 주차가 필요한 이용자에게는 주차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또한 주차를 하여도 지정시간이 지난다음 인근에 마땅한 주차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어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단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검토가 필요함.
- 별표1의 비고란의 주차요금 감면제도 조정은 그동안 운영해 온 각종 주차요금 감면제도 중 10부제 운행차량 및 카풀차량에 대한 감면제도 등과 같이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이용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제도들은 폐지하였고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자 및 800cc 미만의 경형차 이용자, 승용차 자율요일제 이행차량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확대하거나 우대하였으며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의2에서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바퀴채움제 등 운행 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앞으로 주차장 운영이 기계화되면서 무인 운영화가 상설화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정주차차량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제재강화 방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임.

-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자격기준을 종전에는 “구청장이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안제4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자격기준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구체화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대상자격으로 추가하였는바 이는 사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운영에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한것으로서 지방 자치제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7. 참고자료(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91.12.14, 2000.1.28>
-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
  -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개정83.12.31, 95.12.29, 99.2.8, 2003.7.29>